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용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288

발의연월일: 2024. 12. 6.

발 의 자: 박용갑·장철민·김영호

박 정・한민수・문정복

황명선 · 복기왕 · 황정아

이소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내란에 준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,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「계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을 방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.

이러한 과정에서 현행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호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은 물론, 군과 경찰 등이 국회 주변에 차량 등을 배치하고,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며, 무장병력을 본 청 주변에 배치하는 등 현행법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본회의에 출석 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에 출입하려고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방해함.

이에 국회의장이 국회 회의장 건물 안과 밖은 물론, 국회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국회에 국회 경호를 전담할 국회경비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, 누구든지 의원의 본회의 또 는 위원회 출석, 국회 출입 등을 방해한 경우, 현행법 166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계엄 선포 등 비상시국에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43조, 제144조, 제148조의3, 제166조제1항 등)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경호구역(국회 안에 있는 모든 건물과 부지, 필요한 경우국회 인근 지역을 포함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- 1. 제1항에 따른 국회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2. 제148조의3에 따라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 및 국회 출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3. 「계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최하는 경우
- 4. 내우외환,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·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
- 5.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

제144조의 제목 "(경위와 경찰관)"을 "(국회경비대의 설치·운영 등)"

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경위(警衛)를 둔다"를 "국회경비대를 설치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국회경비대에 의장이 임명하고,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하는 대장을 비롯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1급부터 9급까지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두며,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경호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-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국회경비대가 경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 또는 장비를 휴대 및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무기 또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국회경비대는 의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143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지정한 경호구역 등에서 국회의 질서 유지와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 및 국회 출입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경호 및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.
- ⑤ 그 밖에 국회경비대 설치와 조직,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48조의3의 제목 중 "회의장"을 "회의장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

목 외의 부분 중 "위원회 회의장"을 "위원회 회의장, 제143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지정한 경호구역 등"으로 한다.

제166조제1항 중 "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"을 "제148조의3 및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거나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 및 국회 출입 등을 방해할 목적"으로, "그 부근"을 "그 부근(제143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지정한 경호구역을 포함한다)"로, "폭력행위"를 "폭력행위,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 등의 행위"로, "의원의 회의장 출입"을 "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 및 국회 출입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3조(의장의 경호권) 의장은	제143조(의장의 경호권) ① 의장
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	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
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	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
을 행사한다.	호권을 행사한다.
<u><신 설></u>	②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
	하는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
	고 판단되는 경우, 경호구역(국
	회 안에 있는 모든 건물과 부
	지, 필요한 경우 국회 인근 지
	역을 포함한다)을 지정할 수
	<u>있다.</u>
	1. 제1항에 따른 국회의 질서
	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	2. 제148조의3에 따라 의원의
	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 및
	국회 출입 등을 위하여 필요
	<u>한 경우</u>
	3. 「계엄법」 제11조제1항에
	따라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
	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
	최하는 경우
	4. 내우외환, 천재지변 또는 중
	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가

제144조<u>(경위와 경찰관)</u> 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<u>경위</u> (警衛)를 둔다.

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,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, 경찰공무원은 회

발생한 경우

- 5.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 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 대가 발생하여 의장이 필요하 다고 판단한 경우
- 제144조<u>(국회경비대의 설치·운</u> <u>영 등)</u> ① ------국회경비대를 설치 한다.
 -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국회경비대에 의장이 임명하고,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며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하는 대장을 비롯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1급부터 9급까지의 경호공무원과 일반 직 국가공무원을 두며,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경호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 -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국회 경비대가 경호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

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148조의3(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)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 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 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 | 는 아니 된다.

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 또는 장비를 휴대 및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무기 또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그 사태 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 단되는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 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국회경비대는 의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143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지정한 경호구역 등에서 국회의 질서 유지와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 원회 출석 및 국회 출입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경호 및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.

⑤ 그 밖에 국회경비대 설치와 조직,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 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48조의3(회의장 등 출입의 방 해 금지) -----

----- 위원회 회의 장, 제143조제1항에 따라 의장 이 지정한 경호구역 등 -----

제166조(국회 회의 방해죄) ① <u>제</u> | 제166조(국회 회의 방해죄) ① <u>제</u>

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 148조의3 및 제165조를 위반하 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거나 나 그 부근에서 폭행, 체포·감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 금, 협박, 주거침입·퇴거불응, 석 및 국회 출입 등을 방해할 목적----- 그 부근(제1 43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지정 한 경호구역을 포함한다) --------- <u>폭력</u>행위, 출 입을 차단하기 위한 각종 시설 물 등의 설치 등의 행위 -----------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 및 국회 출입 ---